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다목적댐 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한
수익자부담금 폐지〉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2300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다목적댐 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한 수익자부담금 폐지	2

I. 제안경위

2024년 7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건설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다목적댐 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한 수익자부담금 폐지

개정안은 다목적댐 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한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의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3조부터 23조의3까지 및 제37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수익자부담금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시 해당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流水)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댐건설 완료 후 댐건설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예상 증가수익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삭 제>

수익자부담금으로 결정·부과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수익자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산출방법과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수익자부담금 등 결정·부과의 취소·변경 및 반환)

① 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자부담금등”이라 한다)이 결정·부과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이 폐지되었을 때
2.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수익자 부담금등을 부담할 자가 해당

<삭 제>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한 이익
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3. 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시 해
당 수익자가 그 사업에 관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취소되
거나 변경되어 해당 다목적댐
의 건설로 인한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
경으로 인하여 제23조에 따라
수익자부담금등을 부담할 자의
예상 수익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부과
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금등을 낸 자에게 그
에 상당하는 수익자부담금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
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過誤納)된 수익자부
담금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등의 결정·부과가 취소된 경
우

3. 제2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등의 결정·부과가 변경되어
수익자부담금등이 감소한 경
우

제23조의3(수익자부담금 부과처

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
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
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
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에 따른다.

제3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가
산금 또는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납부

<삭 제>

제3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 부담금 -----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독촉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 3. 4.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u>부담금·가산금</u> 및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u>부담금·가산금</u>과 납부금을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4. (현행과 같음) ② ----- ----- --- <u>부담금</u> ----- ----- -----. ③ ----- <u>부담금</u>----- ----- ----- -----.
--	---

현행법¹⁾은 환경부장관이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예상 수익의 범위에서 댐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1) 법 제23조(수익자부담금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시 해당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流水)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댐건설 완료 후 댐건설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예상 증가수익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부담금으로 결정·부과할 수 있다.

수익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수익자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수익자부담금 제도개요]

- ☐ 목적: 다목적댐 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댐 건설 비용의 일부를 부과
- ☐ 대상: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
 - * 댐이 건설되면 댐으로부터 용수의 공급, 하천유지 등을 위하여 하류에 일정 유량을 항상 흘려보내게 되므로 하류에 있는 발전사업자는 갈수기에도 안정적으로 발전이 가능하게 되어 발전수익 증가 예상
- ☐ 산정방법: 댐건설 완료 후 예상 증가수익(전력량 * 전기요금) * 50%
 - * 댐건설공사비 총액의 1/2 이내로 제한
- ☐ 납부시기: 댐 건설기간 중 매년 분할 납부

자료: 환경부

한편, 정부는 현행법상의 부담금 중 부과목적 또는 원칙에 맞지 아니하거나 손쉬운 재원 조달을 위해 국민과 기업에 부과하던 부담금 중 부과 실적이 미미하여 부과 실효성이 낮은 부담금들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2024년 3월 27일)’을 발표한 바 있음³⁾

2) **법 제23조(수익자부담금 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수익자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산출방법과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주요 내용 >

- ☐ (추진배경) 그간 부담금 지속 정비에도 국민·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이 존속 중('24년 기준 91개, 24조원 규모 운용중(GDP 대비 약 1% 수준))
- ☐ (진행경과) 부담금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 민관 TF를 통한 정비기준·대상 논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비 방안 마련

< 부담금 폐지 관련 주요 법률 개정안(정부안) 현황 >

연번	부담금	부처	법률	주요 내용
1	학교용지부담금	교육	학교용지법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2	출국납부금	외교	국제질병퇴치기금법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
3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부담금	행안	지방자치법	수익자부담금 폐지
4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문체	영화비디오법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5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	문체	관광진흥법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 폐지
6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문체	관광진흥법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폐지
7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산업	광업법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폐지
8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산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폐지
9	수질개선부담금	환경	먹는물관리법, 지하수법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 목적 및 사용 용도가 유사한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
10	수익자부담금	환경	댐건설관리법	수익자부담금 폐지
11	원인자부담금	국토	도로법	원인자부담금 폐지
12	시설부담금(물류단지)	국토	물류시설법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폐지
13	시설부담금(산업단지)	국토	산업입지법	산업단지 시설부담금 폐지
14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국토	공공주택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시설 설치비용부담금 폐지
15	수산자원조성금	해수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조성금 폐지
16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해수	해양심층수법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폐지
17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해수	해운법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
18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기재 복지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폐지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

□ (주요내용)

①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거나, 요금 인하 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 정비(8개)

- 전력기금 부담금: 약 30% 인하, △0.9조원
- 출국납부금: 4천원 인하(1.1→0.7만원), 면제대상 확대(2세→12세 미만)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입장권 가액의 3%)
- 국제교류기여금: 복수여권 3천원 인하, 단수여권·여행증명서 면제
- 석유수입부과금: 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 30% 수준 인하
- 기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50% 인하, 수산자원조성금 폐지

②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요금·가격 등을 통해 국민에 부담이 전가되는 부담금 정비(11개)

-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분양가격의 0.8%, 공동주택 기준), △0.4조원
- 개발부담금: '24년 한시 감면(수도권 50%, 非수도권 면제), △0.3조원
- 환경개선부담금 등 4개: 중소, 영세기업 대상 감면·폐지
 - * 환경개선부담금(경유차 소유자 중 영세 자영업자 대상 50% 인하), 폐기물처분부담금(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대상 확대, 연매출 600→1,000억원) 등
- 농지보전부담금: 非 농업진흥지역 효율 인하(공시지가30→20%), △0.3조원
- 기타: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껌 제외, 방제분담금 효율 인하 등

③ (기타 여건 변화, 실효성 미흡 등: 13개) 수익자부담금(댐건설관리법) 등 폐지

이에 따라 정부는 민관 TF를 통한 부담금 전수조사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현행 91개로 유지 중이던 부담금 수를 69개로 축소⁴⁾ 하고자 환경부·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 소관의 부담금 폐지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 22건을 제출하였음.⁵⁾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반영하여 다목적댐 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한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9. 9. 7. 제정) 이후 건설된 다목적댐의 하류 지역 발전사업자(부과대상)가 없어 현재 까지 수익자부담금 부과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⁶⁾, 부담금을 폐지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547

4) 환경부 소관 20개 부담금 중 2개 부담금 폐지(수질개선부담금·수익자부담금 개정안 발의), 3개 부담금 감면('24. 7. 1, 폐기물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폐기물처분부담금 시행령 개정 완료)

5) 기획재정부 소관 「부담금관리 기본법」(18개 부담금 일괄 폐지 관련) 개정안 포함하여 22건

6) 舊 「특정다목적댐법」(1966.5.24.제정, 1999.9.7.폐지)*에 따라 소양강 다목적댐('73년 준공) 건설 시 하류 발전사업자인 한국전력에게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한 사례는 있으나, 현행법(「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음.

* 「특정다목적댐법」 제10조 (수익자부담금) ①건설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부담금을 부담할 자의 범위, 부담금산출 및 징수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